2024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4년 한눈에 보이는 유럽연합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_ 225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_ 238

03. 비관세장벽 현황_ 241

04. 수출 애로사항_ 259

05. 현지화 자문보고서_ 262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TBs, Non Tariff Barrier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2) 01

(1) 시장개요

♪ 시장규모

- 2023년 EU(유럽연합) 회원국의 농축산식품 시장규모는 1조 1,416억 달러(한화 약 1,678조 2.108억 원)로, 전년 대비 4.3% 성장함
 - 전체 식품 중 신선식품의 비중은 62.8%로 7.175억 달러(한화 약 1.054조 7.103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4.4% 증가함
 - * 육류 시장이 21.9%로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낙농품(15.8%), 채소류(12.4%), 과일 및 견과류(9.9%) 순임
 - 가공식품의 비중은 37.2%로 4.242억 달러(한화 약 623조 5.005억 원)를 기록함
 - * 스낵류 시장이 가공식품 시장의 13.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집계되었고,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2.7%), 편의 식품(4.9%), 펫푸드(2.2%) 순임

표 1. EU 식품 시장규모(2019~2023)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904.2	948.0	1,032.6	1,094.1	1,141.6	100.0	4.3
신선식품	560.9	589.7	644.3	687.4	717.5	62.8	4.4
- 육류	196.2	207.1	224.3	239.7	250.4	21.9	4.5
- 낙농품	139.7	146.5	161.0	172.4	180.9	15.8	4.9
- 채소류	110.5	115.8	127.1	135.7	141.2	12.4	4.1
- 과일 및 견과류	88.5	92.9	102.1	108.6	112.5	9.9	3.6
- 유지류	26.0	27.4	29.8	31.0	32.5	2.8	4.7
가공식품	343.2	358.2	388.3	406.7	424.2	37.2	4.3
- 스낵류	120.9	125.3	134.7	143.1	149.3	13.1	4.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20.8	126.1	137.9	139.8	145.1	12.7	3.8
- 편의식품	43.2	45.5	50.1	53.8	56.2	4.9	4.4
- 펫푸드	20.4	22.0	22.7	24.5	25.6	2.2	4.5
- 소스 및 향신료	19.4	20.3	22.3	23.9	25.0	2.2	4.6
- 스프레드 및 당류	11.7	12.1	13.1	13.9	14.5	1.3	4.7
- 영유아용 식품	6.9	7.0	7.5	7.7	8.4	0.7	9.4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 (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¹⁾ 환율: 1달러=1.470.00원(2025년 1월 2일, 매매기준율 기준)

^{2) &#}x27;23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ITC Trade Map 등)

- EU 주요 3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2023년 식품 시장규모는 약 5,865억 달러(한화 862조 1,109억 원)로 전년 대비 3.6% 증가함
 - 전체 식품시장이 가장 큰 국가인 독일의 시장규모는 2,291억 달러(한화 336조 7,329억 원)이며, 다음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순임
 - 주요 3개국의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3,727억 달러(한화 547조 8,396억 원)로, 전체 식품시장의 63.5% 차지함
 - * 독일의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1,451억 달러(한화 약 213조 2,676억 원)로 독일 전체 식품시장의 63.3%를 차지했고, 주요 신선 식품 품목은 육류(19.1%), 낙농품(17.8%), 채소류(13.2%) 순임
 - * 프랑스의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1,892억 달러(한화 약 278조 1,240억 원)로 프랑스 식품시장의 60.4%를 차지했고, 주요 신선 식품 품목은 육류(24.9%), 낙농품(14.9%), 채소류(10.4%) 순임
 - * 이탈리아의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1,682억 달러(한화 약 247조 2,540억 원)로 자국 식품시장의 67.4%를 차지했고, 주요 신선 식품 품목은 육류(19.3%), 채소류(17.1%), 낙농품(15.6%) 순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2,138억 달러(한화 약 314조 2,713억 원)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36.5%를 차지해 가공식품과 격차가 있음
 - * 독일의 가공식품 시장은 840억 달레(한화 약 123조 4,653억 원)로 독일 식품시장의 36.7%를 차지하며, 주요 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4.7%), 스낵류(10.4%), 편의식품(4.7%) 순임
 - * 프랑스의 가공식품 시장은 749억 달러(한화 약 110조 1,030억 원)로 자국 식품시장의 39.6%를 차지하며, 주요 품목은 베이 커리 및 시리얼류(15,0%), 스낵류(11,3%), 편의식품(5,0%) 순임
 - * 이탈리아의 가공식품 시장은 549억 달러(한화 약 80조 7,030억 원)로 자국 식품시장의 32.6%를 차지하며, 주요 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21.4%), 스낵류(19.6%), 편의식품(6.4%) 순임

표 2. 주요 3개국 시장규	(단위: 1	십억 달려,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476.8	498.2	538.7	566.1	586.5	100	3.6
- 신선식품	298.4	312.8	339.7	359.6	372.7	63.5	3.6
- 가공식품	178.4	185.4	199.0	206.5	213.8	36.5	3.5
프랑스	157.8	165.3	177.0	183.3	189.2	100.0	3.2
- 신선식품	93.9	99.0	106.1	110.7	114.3	60.4	3.3
- 가공식품	63.9	66.3	70.9	72.6	74.9	39.6	3.2
독일	180.5	190.3	207.8	220.9	229.1	100.0	3.7
- 신선식품	112.3	118.8	130.7	140.0	145.1	63.3	3.6
- 가공식품	68.2	71.5	77.1	80.9	84.0	36.7	3.8
이탈리아	138.5	142.6	153.9	161.9	168.2	100.0	3.9
- 신선식품	92.2	95.0	102.9	108.9	113.3	67.4	4.0
- 가공식품	46.3	47.6	51.0	53.0	54.9	32.6	3.6

^{*} 출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소비인구 및 특성

표 2 1이다 시프 AHIOH(2010-2022)

- EU의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4억 4,860명으로, 전년과 비슷함
 - 연령대별 인구는 55세 이상의 중장년층 인구가 1억 7.400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의 43.5%를 차지함. 이어 45~54세(15.8%). 35~44세(14.9%). 25~34세(13.4%). 0~14세(12.6%). 15~24세(12.0%) 순임
 - 여성 인구 수는 약 2억 2.930만 명(약 51.1%). 남성 인구 수는 약 2억 1.930만 명(48.9%)으로, 여성 인구의 비중이 남성 인구보다 비교적 높음
- 2023년 가구 수는 총 1억 9.71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만 2.400달러(한화 약 3,293만 원)로 집계됨
 -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중 식품에 대한 소비액은 약 13.8%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6.9% 증가함
- EU 주요 3개국의 2023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총 8,528달러(한화 약 1,254만 원)로 전년 대비 3.6% 증가함
 -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이 가장 큰 국가는 2.920.8달러(한화 약 429만 원)을 기록한 프랑스이며. 뒤이어 이탈리아가 2.856.0달리(한화 약 420만 원), 독일이 2.751.2달러(한화 약 404만 원)로 집계됨

표 3. 1인당 식품 소비액		(난	위 : 달려,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936.0	7,235.9	7,832.2	8,227.7	8,528.0	100.0	3.6
- 신선식품	4,350.6	4,552.3	4,948.4	5,237.7	5,432.6	63.7	3.7
- 가공식품	2,585.4	2,683.6	2,883.8	2,990.0	3,095.4	57.0	3.5
프랑스	2,449.7	2,558.9	2,742.6	2,835.7	2,920.8	100.0	3.0
- 신선식품	1,458.4	1,,533.4	1,644.4	1,712.2	1,765.2	60.4	3.1
- 가공식품	991.3	1,025.5	1,098.2	1,123.5	1,155.6	39.6	2.9
독일	2,170.2	2,281.2	2,493.3	2,651.0	2,751.2	100.0	3.8
- 신선식품	1,350.4	1,423.9	1,568.7	1,680.8	1,742.8	67.7	3.7
- 가공식품	819.8	857.3	924.6	970.2	1,008.4	32.3	3.9
이탈리아	2,316.1	2,395.8	2,596.3	2,741.0	2,856.0	100.0	4.2
- 신선식품	1,541.8	1,595.0	1,735.3	1,844.7	1,924.6	67.4	4.3
- 가공식품	774.3	800.8	861	896.3	931.4	32.6	3.9

^{*} 출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주요 3개국 모두 신선식품에 대한 1인당 연간 소비액이 각각 약 60% 이상을 차지해 가공식품 보다 비중이 높으며, 주요 소비 품목은 공통적으로 육류임
 - (프랑스) 1인당 신선식품 소비액은 1,765.2달러(한화 약 259만 원)이며,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은 육류 (25.0%), 낙농품(14.9%), 채소류(10.4%) 순임
 - (독일) 1인당 신선식품 소비액은 1,742.8달러(한화 약 2556만 원)이며,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은 육류 (18.5%), 낙농품(17.9%), 채소류(13.2%) 순임
 - (이탈리아) 1인당 신선식품 소비액은 1,924.6달러(한화 약 283만 원)이며, 주요 품목 중에서 육류 (19.3%), 채소류(17.1%), 낙농품(15.7%) 순으로 비중이 큼
- 주요 3개국의 가공식품 평균 소비 비중은 36.3%이며 세부 품목 중 공통적으로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와 스낵류에 가장 많이 지출함
 - (프랑스) 가장 큰 1인당 가공식품 소비액인 1,155.6달러(한화 약 170만 원)로 집계되며, 이어 베이 커리 및 시리얼류(14.9%), 스낵류(11.2%), 편의식품(5.0%) 순임
 - (독일) 1인당 가공식품 소비액은 1,008.4달러(한화 약 148만 원)이며, 주요 소비 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4.5%), 스낵류(10.4%), 편의식품(4.7%)순임
 - (이탈리아) 1인당 가공식품 소비액은 931.4달러(한화 약 137만 원)이며, 주요 소비 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2.7%), 스낵류(11.6%), 편의식품(3.8%) 순임

(단위: 달러 %)

T :: T 3: - -	`						
국가명	正是	<mark>방스</mark>	독	일	이탈리아		
구분	1인당 소비액	비중	1인당 소비액	비중	1인당 소비액	비중	
전체	2,920.8	100.0	2,751.2	100.0	2,856.0	100.0	
신선식품	1,765.2	60.4	1,742.8	63.3	1,924.6	67.4	
- 육류	728.9	25.0	509.8	18.5	551.5	19.3	
- 낙농품	435.0	14.9	491.1	17.9	447.3	15.7	
- 채소류	304.4	10.4	362.7	13.2	487.6	17.1	
- 과일 및 견과류	219.0	7.5	293.3	10.7	327.0	11.4	
- 유지류	77.9	2.7	85.9	3.1	111.2	3.9	
가공식품	1,155.6	39.6	1,008.4	36.7	931.4	32.6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436.6	14.9	399.9	14.5	363.1	12.7	
- 스낵류	328.5	11.2	285.2	10.4	332.5	11.6	
- 편의식품	145.0	5.0	129.6	4.7	108.3	3.8	
- 펫푸드	77.2	2.6	68.7	2.5	65.1	2.3	
- 소스 및 향신료	74.0	2.5	78.3	2.8	27.3	1.0	
- 스프레드 및 당류	66.0	2.3	32.1	1.2	23.3	0.8	
- 영유아용 식품	28.3	1.0	14.6	0.5	11.8	0.4	

^{*} 출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표 4. 주요 3개국의 품목별 1인당 식품 소비액(2023)

(2) 수출입현황

♪ 한국의 對EU 농식품 수출 현황

- 2023년 한국산 농림축사식품의 EU 회원국 수출액은 약 4억 5.845만 달러(한화 약 6.739억 원)로 전년 대비 2.0%로 소폭 증가함
 - 전체 수출액 비중의 92.1%를 농산물이 차지하며 축산물, 임산물 순으로 뒤따름,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4억 2.241만 2.000달러(한화 약 1조 9.775억 원)로 집계되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함
 - 축산물 수출액은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약 1.893만 9,000달러(한화 약 128억 원)로 수출규모는 전년 보다 74.2% 급증함
 -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1.710만 5.000달러(한화 약 251억 원)로 전체의 3.7%를 차지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3.5%의 감소 동향을 보임

표 5. 한국의 對EU 공수산식품 수술 현황 2021년~2023년								(난위 : 톤, 전 날려, %)		
구분	202	21년	2022년		2023년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21~'23)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농림축산식품	182,252	388,449	198,727	449,558	191,130	458,455	100.0	2.0	2.4	
농산물	168,956	357,608	191,580	423,934	179,209	422,412	92.1	-0.4	3.0	
축산물	6,826	16,738	1,894	10,873	5,899	18,939	4.1	74.2	-7.0	
임산물	6,471	14,103	5,253	14,752	6,023	17,105	3.7	16.0	-3.5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KATI)

- 2023년 한국산 농식품의 주요 EU 수출 품목 중 가공식품이 전체 식품 규모의 84.6%를 차지하며. 신선식품과 상당한 격차를 보임
 - 신선식품의 對EU 수출액 총액은 약 3.497만 5.000달러(한화 약 514억 원)이며, 전년보다 수출액이 19.3% 증가했으나 최근 3개년 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6% 감소함
 - * 수출 상위 품목으로 김치가 전체 수출액의 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새송이버섯(2,7%), 기타 동물성유지 (2.5%), 기타 과실류(1.2%), 팽이버섯(1.0%) 순임
 - * 주요 신선식품 품목 중 기타 동물성유지가 전년 대비 218.4%의 기록적인 성장을 보임
 - * 새송이버섯은 신선식품 중 수출 2위 품목으로 집계되었으나, 수출액은 전년보다 29.5% 감소한 수준임

- 2023년 한국 가공식품의 EU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년보다 수출액이 46.1% 증가함
 - 2023년 가공식품의 EU 수출규모는 약 1억 9,236만 8,000달러(한화 약 2,828억 원)이며, 최근 3개년 기준 연평균 9,2%의 증가세를 보임
 - * 주요 수출 품목은 약 1억 764만 9,000달러(한화 약 1,582억 원)을 차지한 라면으로, 비중은 전체 가공식품 품목의 47.4%를 차지함

(단위 : 톤, 천 달러, %)

* 그다음으로 비중이 큰 품목은 기타 음료(13.4%), 기타 파스타(5.2%), 기타 베이커리(4.5%) 순임

표 6. 한국의 對EU 농림축산식품 수출 품목별 현황 2021년~2023년

구분	202	2021년 2022년		1 2022년 2023년		('23)	('23/'22)	('21~'23)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농림축산식품	80,570	160,243	71,708	160,978	93,358	227,342	100.0	41.2	7.6
신선식품	12,073	35,616	7,185	29,318	11,701	34,975	15.4	19.3	-1.6
김치	2,155	9,208	2,211	9,839	2,609	11,729	5.2	19.2	10.0
새송이버섯	2,046	10,843	1,388	8,731	1,142	6,154	2.7	-29.5	-25.3
동물성유지 (기타)	6,022	6,270	1,532	1,758	5,483	5,597	2.5	218.4	-4.6
과실류(기타)	264	2,868	254	2,302	253	2,726	1.2	18.4	-2.2
팽이버섯	729	2,138	616	1,584	787	2,211	1.0	39.5	3.9
감귤류(기타)	101	711	156	1,214	237	1,952	0.9	60.7	53.1
유자	230	914	282	1,050	410	1,587	0.7	51.2	33.7
고추	248	1,226	265	1,325	279	1,518	0.7	14.6	6.1
쌀	79	263	315	633	326	770	0.3	21.7	103.4
채소류(기타)	200	1,177	167	883	176	731	0.3	-17.3	-6.3
가공식품	68,497	124,626	64,523	131,660	81,657	192,368	84.6	46.1	9.2
라면	14,520	51,748	17,316	64,377	26,904	107,649	47.4	67.2	36.1

25,664

11,069

7,463

7,349

4,738

6.221

4,779

38,346

4,297

4,124

1,374

4,861

370

1,382

30,577

11,883

10,241

8,758

8,668

8.434

6,157

13.4

5.2

4.5

3.9

3.8

3.7

2.7

19.1

7.4

37.2

19.2

82.9

35.6

28.8

-1.0

14.7

1.5

7.0

3.6

-25.5

7.6

음료(기타)

파스타(기타)

커피조제품

인스턴트면 젤라틴

소스류(기타)

베이커리(기타)

39,117

3,268

3,999

1,200

4,532

666

1,194

27,463

8,010

9,052

8,794

6,966

7.625

4,968

34,124

4,835

3,210

924

2,703

307

1,103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KATI)

(3) 통관 및 검역 제도

◆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복합식품 생산시설 등록	• 한국산 동물 유래 재료(수산물 포함)가 사용된 복합식품 수출 시, 해당 재료의 생산 · 가공시설 등록 필요 •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생산·가공시설 등록 필요 ▼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유럽연합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수출신고서 ②상업송장 ③포장명세서 등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EORI 번호 발급	• 유럽연합에서 수입통관 진행 시 EORI 번호(통관고유번호) 발급 필수 • 유럽연합위원회(EC)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유럽연합 수입업체
적하목록 사전제출	• 운송수단별 기한을 준수해 적하목록(ENS)을 세관에 제출 • 제출정보: ① 화물에 대한 정보 ② 화물 운송인 및 송하인 정보 ③ 운송 및 운항 정보 등	유럽연합 운송· 수입업체
수입신고	 물품 도착 30일 전~도착 후 90일 이내 수입신고 완료 필요 통합 세관 신고서(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양식의 수입신고서와 제반서류 제출 필요 제출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④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⑤ 위생증명서 등 검사증명서(필요 시) ⑥ 관세가격신고서 등 	
수입검사	●	유럽연합 수입업체
관세 납부 및 반출	• 관세 납부 후 물품 반출 가능	

▶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저 준비사항

- 유럽연합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는 복합식품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필요
- 복합식품(Composite Food)은 동물유래 재료를 포함한 동물유래 가공식품과 식물성 재료가 혼합된 식품을 뜻함
- '동물유래 재료'는 육류, 수산물, 젤라틴, 콜라겐, 유제품, 달걀, 꿀, 곤충을 일컬으며, '동물유래 가공식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동물유래 가공식품의 정의 및 예시〉

- ① 육류, 우유, 계란을 포함한 알류, 꿀, 수산물 등의 동물유래 재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공 식품(즉석 사골국물, 치즈, 난백분, 액젓 등)
- ② 식물성 재료가 사용되었으나 동물유래 재료의 특성을 바꾸지 않는 경우(올리브유에 절인 통조림 참치, 한약재가 들어간 레토르트 삼계탕 등)
- ③ 젤라틴, 콜라겐, 카제인 등 고도로 정제되었으나 원재료가 동물로부터 유래한 재료

복합식품 수입 규정

- 모든 식품에 사용된 동물유래 재료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며, 해당 식품의 보관 조건과 육류 함유 여부에 따라 규정 적용 조건을 달리함

〈한국산 복합식품의 유럽 수출조건〉

- ① 육류를 함유한 한국산 식품은 원산지나 함유량에 상관없이 EU 수출이 불가함
- ② 현재 한국산 수산물, 젤라틴, 콜라겐, 곤충만이 EU로 수출 가능
- ③ EU 수출용 한국산 복합식품에 사용되는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식품의 경우 EU 회원국 또는 승인국의 승인 시설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해야 함
- 젓갈(김치), 유제품(과자류, 음료류) 및 분말(라면스프) 등은 대표적인 복합식품으로, 유럽연합역내로 한국산 동물유래 재료가 사용된 복합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료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이 요구됨
- (수산물) 한국산 수산물은 2023년 11월 기준 유럽연합 역내로 수출할 수 있어, 한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복합식품 수출업체는 제품에 사용된 한국산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을 '국립수산물 품질 관리원'에 등록해야 함

※ (원문사이트)

 $https://food.ec.europa.eu/horizontal-topics/international-affairs/eu-entry-conditions/composite-products_en$

		• 수출 품목에 대한 유럽연합의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 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 EU 공통 식품법과 개별 국가 식품법 규정 확인 필요
원산지증명		・유럽연합 수출 시 한-EU FTA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발급	- FTA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음

▶ 국내 수<u>출통</u>관 절차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 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완제품 :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우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수출신고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 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	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수출검역	- 유럽연합 수입업체의 요	 유럽연합으로 규제 농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유럽연합 수입업체의 요구가 있거나, △감귤 △사과 △배 △핵과류 △고추 △가지 등 규제 농식품으로 지정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	사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검사신청서 ② 검사대상식물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수출검역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식물검역은 검역시행장으로	는 상대국의 검역요건 적합 여부를 검사함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축산물검역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됨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날수 있음					
운송 수단 선적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유럽연합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 유럽연합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개요	유럽연합 회원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유럽연합의 지침, 규정 및 의무를 준수함 유럽연합은 관세동맹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동일한 상품에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지점 한 지점 지점
	– 유럽연합 회원국 중 프랑스의 식품 안전 관리 기관은 DGCCRF(General Direction for Competition, Consumption and Frauds)로서, 국경 입항(국)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 유럽연합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수출입업자, 운송업체는 통관고유번호(EORI 번호) 발급 필수
EORI 번호 발급	– EORI 번호는 유럽연합 공동 세관등록번호로,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는 EORI 번호를 의무적 으로 사용해야 함
C+ 26	– 유럽연합 회원국 세관 당국에 등록된 EORI 번호는 전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 되므로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입통관 진행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서 다시 EORI 번호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번호 발급

- EORI 번호는 유럽연합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EORI 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한 후 수입통관 · 검역 절차를 진행해야 함
 - → 유럽연합위원회 사이트 URL: ec.europa.eu

• 운송업체는 수입국 도착 전 운송수단별 기한을 준수해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

- 화물에 대한 정보(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코드, 컨테이너 번호, 위험품목 코드 등). 화물 운송인 및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 등을 유럽연합 도착항의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함

〈유럽연합 운송수단별 적하목록 제출기한〉

적하목록 사전제출

컨테이너 해상운송	선적 24시간 전
벌크 해상 운송	도착 2시간 전
4시간 미만 항 공운송	실제 이륙 시간까지
4시간 이상 항 공운송	유럽연합 관세 영역의 첫 공항 도착 최소 4시간 전
철도운송	도착 1시간 전

수입신고

- 유럽연합 수입업체는 물품 도착 30일 전부터 세관에 도착 후 90일 이내에 수입신고 완료 필요
-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수입물품의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은 수입신고서를 서면 혹은 세관의 통관시스템 전송방식으로 제출해야 함
- 수입신고서 제출 시 통합 세관 신고서(SAD) 양식을 사용해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유럽연합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 ④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 ⑤ 위생증명서 등 검사증명서(필요 시) ⑥ 관세가격신고서

수입검사

- 모든 수입식품은 무작위로 세관의 수입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규정 (EU) 2019/1793에 고시된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사 비중이 증가하거나 의무적으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음
- 수입검사 시 ① 서류검사(Documentary check) ② 제품검사(Identity check) ③ 물리적검사 (Physical check)가 진행될 수 있음

- 육안검사를 실시할 경우 수출입업체 및 대리인 참석 하에 물품선별검사를 실시하며, 별도의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 역내 운송허가를 통지함 (유럽연합 식품 수입검사 종류) 서류 -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사함 검사 -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실시함 - 제출서류의 세부사항과 실제 수입물품을 교차 대조하는 검사 - 화물검사, 컨테이너 봉인 확인, 상품 포장 확인 등을 통해 상품이 서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함 물리적 - 포장을 개봉하고 제품을 검사하여 신고된 정보와 일치하는 제품인지를 검사 검사 - 검사관을 통해 관능평가 및 샘플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 유럽연합 수입업체는 관세 납부 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 -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수입검사 통과 시 보세구역 반출 전 관세를 납부하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관세 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하며, 선하증권 원본 및 관세 영수증 발행 후 반출 가능함			
수입검사 사류 검사 -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사함 -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실시함 - 제출서류의 세부사항과 실제 수입물품을 교차 대조하는 검사 - 화물검사, 컨테이너 봉인 확인, 상품 포장 확인 등을 통해 상품이 서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함 물리적 - 포장을 개봉하고 제품을 검사하여 신고된 정보와 일치하는 제품인지를 검사 검사 - 검사관을 통해 관능평가 및 샘플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 유럽연합 수입업체는 관세 납부 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 -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수입검사 통과 시 보세구역 반출 전 관세를 납부하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관세 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하며, 선하증권 원본 및			
수입검사 -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실시함 - 제출서류의 세부사항과 실제 수입물품을 교차 대조하는 검사 - 화물검사, 컨테이너 봉인 확인, 상품 포장 확인 등을 통해 상품이 서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함 물리적 - 포장을 개봉하고 제품을 검사하여 신고된 정보와 일치하는 제품인지를 검사 검사 - 검사관을 통해 관능평가 및 샘플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 유럽연합 수입업체는 관세 납부 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 -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수입검사 통과 시 보세구역 반출 전 관세를 납부하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관세 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하며, 선하증권 원본 및			〈유럽연합 식품 수입검사 종류〉
- 제출서류의 세부사항과 실제 수입물품을 교차 대조하는 검사 - 화물검사, 컨테이너 봉인 확인, 상품 포장 확인 등을 통해 상품이 서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함 물리적 - 포장을 개봉하고 제품을 검사하여 신고된 정보와 일치하는 제품인지를 검사 검사 - 검사관을 통해 관능평가 및 샘플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 유럽연합 수입업체는 관세 납부 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 -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수입검사 통과 시 보세구역 반출 전 관세를 납부하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관세 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하며, 선하증권 원본 및	스이거니		
건사 - 검사관을 통해 관능평가 및 샘플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 유럽연합 수입업체는 관세 납부 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 -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수입검사 통과 시 보세구역 반출 전 관세를 납부하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관세 납부 및 - 관세 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하며, 선하증권 원본 및	<u> 구입</u> 검사		- 화물검사, 컨테이너 봉인 확인, 상품 포장 확인 등을 통해 상품이 서류 정보와
-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수입검사 통과 시 보세구역 반출 전 관세를 납부하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관세 납부 및 - 관세 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하며, 선하증권 원본 및			
-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수입검사 통과 시 보세구역 반출 전 관세를 납부하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관세 납부 및 - 관세 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하며, 선하증권 원본 및			
관세 납부 및 반출할 수 있음 물품 반출 - 관세 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하며, 선하증권 원본 및		• 유럽연합 수	s입업체는 관세 납부 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유럽 국가 간 관세 철폐로 유럽 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유럽 국가	간 관세 철폐로 유럽 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 FTA 체결현황

표 7. 유럽연합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 중
(발효) Western Balkans, 알제리, 안도라, CARIFORUM, 아르메니아, 아르제바이잔, SADC, Central America,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ESA, West Africa, 이집트, 페로 제도, 피지, 조지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라크,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코소보,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ESA, 멕시코, 몰도바, 모로코, 노르웨이, 팔레스타인 당국, 파푸아뉴기니, 마다가스카, 사모아, 산마리노,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 한국, 스위스, 튀니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베트남, 영국, 뉴질랜드 (서명 및 타결) Mercosur, 베냉, 토코, 부르키나파소, EAC, 카보베르데, 감비아, 기니, 기니비소, 아이티,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해당사항 없음

^{*} 주: 2025.01. 조회 기준

표 8.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중	재개개시 여건 조성
한-EU FTA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2025.0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3)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맥류, 수수, 두류(콩, 팥, 녹두 등)
- 생과실 : 감, 포도, 참다래, 밤, 딸기, 블루베리
- 채소류 : 무, 배추, 양배추, 청경채, 당근, 양파, 마늘, 파, 호박, 오이, 참외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등
- * 상기 품목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축산물

- 열처리 가금제품

(2) 수출 불가능 품목

- 코코넛(Cocos nucifera)의 섞유나 피트를 제외한 모든 유기질 상토
- 유럽위원회 시행 규정(EU) 2018/2019에 따라 EU가 지정한 다음의 고위험식물(종자, 분재, 조직배양묘를 제외한 재식용 식물, 34속 1종)

Acacia Mill.	Prunus L.	Jasminum L.	Cornus L.
Alnus Mill.	Salix L.	Lonicera L.	Diospyros L.
Berberis L.	Tilia L.	Persea Mill.	Fraxinus L.
Cassia L.	Acer L.	Quercus L.	Juglans L.
Corylus L.	Annona L.	Sorbus L.	Malus Mill.
Fagus L.	Betula L.	Ulmus L.	Populus L.
Hamamelis L.	Castanea Mill.	Albizia Durazz.	Robinia L.
Ligustrum L.	Crataegus L.	Bauhinia L.	Taxus L.
Nerium L.	Ficus carica L.	Caesalpinia L.	

³⁾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4), https://www.qia.go.kr/listWebQia3WGJYYQ.do?clear=1

- 유럽위원회 시행 규정(EU) 2019/2072 부속서 6에 해당하는 식물(하기 등 21개 항목)
 - 분재가 아닌 향나무속(Juniperus), 편백나무속(Chamaecyparis Spach), 소나무속(Pinus)의 재식용 식물
 - 생과실을 제외한 포도속(Vitis) 식물 전체
 - 생과실, 종자를 제외한 금귤속(Fortunella), 탱자속(Poncirus), 감귤속(Citrus) 식물 전체
- 밤나무속(Castanea) 식물의 수피

◆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요건 ▶ DB 검색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표 9.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ACEMARTmall PARIS (프랑스)
업체 유형	도매, 유통업체
담당자명	Ms. Lee (매니저)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소비자들이 주로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해서 가공식품의 수요가 높음. 가장 인기 있는 한국산 가공식품으로는 인스턴트 면류와 라면이 있음. 이들은 다양한 맛 옵션이 있어서 소비자 들이 쉽게 시도해 볼 수 있음
- 스낵류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맛이 다양하면서 건강한 간식이라는 점에서 선호함
- 인삼은 프랑스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판매되고 있음. 인삼에 대해 잘 알고,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수요 층이 존재함
- 가공된 해조류도 인기가 있으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류는 물류 공급과 보관에 신경 써야 하고, 규정을 준수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비용이 증가하는 등 여러 이유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 이에 따라 현지 기업들은 가공식품에 더 관심이 높음. 시장도 전반적으로 유통기한이 길고, 비교적 물류를 관리하기 용이한 가공식품이 주류를 이루는 추세임

• 수입 시 애로사항

- 프랑스와 유럽연합(EU) 전체가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위반 시에는 엄중하게 처리되므로 수출기업은 주의가 필요함.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며, 유럽연합만의 특정 요구사항도 충족해야 함
- HACCP 인증 규정을 준수하면 수입 과정이 비교적 쉬워질 수 있음

• 최근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이슈

- 정부는 식품에 잔류하는 화학물질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잔류가 확인된 제품은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식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선한 농산물과 육류 제품에 병원균이 존재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

비관세장벽 현황 03

(1) SPS

♠ 주요 SPS 내용

- EU 식품안전청은 내분비 교란 물질(환경호르몬)을 규제하는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제도를 도입하여 잔류 농약 최대 허용치와 함께 수입 식품 검역 기준으로 적용함.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확인된 물질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 식물 보호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식품 유해성분인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의 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감 조치를 시행하며 해당 조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 농도를 규정함
- 수출 가능한 한국산 품목의 카드뮦 잔류 한도 기준치가 낮아짐
- EU 회원국은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공통 규제((EC) No. 1935/2004)를 적용함, 식품 포장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는 2개이며, 그 외 일부 물질은 허용 한도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됨
- 2021년 4월부터 EU로 수입되는 복합식품의 수입규정이 강화되어. EU 잔류물질 승인목록에 명시되 한국산 동물성 제품 중 수출 가능 품목은 수산물, 젤라틴, 콜라겐, 곤충뿐임, 축산물, 우유 및 알 성분이 함유된 한국산 복합식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해성분이 확인된 식품의 수입을 규제함
 - 2021년 3월, 알로에 추출물 관련 높은 유전적 독성 및 발암성이 확인된 알로에-에모딘, 에모딘, 단트론 및 알로에 제제 성분을 규정 (EC) No 1925/2006의 부속서 III – Part A(금지 물질)에 추가함
 - 2022년 초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 속 리스테리아규에 의한 식중독 사망 발생 이후, 유럽의 대형 바이어들은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Global GAP 인증을 요구함
 - 2022년 7월 인스턴트 라면의 야채·버섯 스프가 자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 이프로디온 검축 문제로 통관거부 되면서 라면 스프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강화됨
- EU는 2023년 12월 한국산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 EU 시장접근을 허용하였음. EU 승인시설 목록을 참고하여 수출검역 필요

• EU는 식품에 니아신 공급원으로서 염화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시드 첨가를 승인하기 위해 (EC) No 1925/2006 부록 II의 개정 초안을 공고함. 그 중,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 대체 식품 및 특수 의료 목적의 식품에 해당 물질 첨가를 승인하기 위해서 (EU) No 609/2013 부록의 개정 초안도 공고함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food/plant/pesticides/eu- pesticides-db_en
식품 첨가물 허용치	European Commission	https://food.ec.europa.eu/safety/food- improvement-agents/additives/eu-rules_en
미생물 규정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food/safety/biosafety/ food_hygiene/microbiological_criteria_en
EU에서 승인한 제3국의 제조시설 목록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food/safety/international_ affairs/trade/non-eu-countries_en

● 통보문 개정현황(2024년)

• 동물성 식품 수입 항생제 규제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EU는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고자 「동물에 대한 특정 항생제 사용 금지 및 제3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 동물에 항생제 사용 금지 규정(EU) 2023/905」을 신설함 - 동물 항생제 사용을 2030년까지 50% 감소시키는 목표를 수립 - EU로 수출되는 식용 동물 및 동물제품에 성장 촉진용 및 인체 치료용 특정 항생의약품 사용을 금지 - 의약품 혼합 사료를 통해 동물에게 항생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함 -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평가 후 수입허용국가 최종 확정 - 2026년 9월 3일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 수출 가능 • EU는 이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수입허용국가 98개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행하였고, 2024년 6월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 72개국을 선정 -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만 유럽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음

세부 내용	한국은 2024년 9월 1차 목록 대상으로 선정되어 일부 동물성 식품의 수출자격을 유지 – EU에서 수입이 승인된 한국의 동물성 식품 품목은 닭고기, 수산물 및 관련 제품이 해당하며,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은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승인된 제3국에서 생산된 해당 성분이 포함된 복합식품만 EU로 수출할 수 있음 우리나라 수출 가능 품목: 열처리 닭고기(삼계탕 등),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 식품(김치, 라면 등), 꿀 제품 등의 수출자격 유지
통보일	2024년 9월
시행일 2024년 9월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ld=NTB0203694

(2) TBT⁴⁾

♪ 주요 TBT 내용

- "EU 식품 알레르겐 목록 개정"이 2024년 2월 15일 공표됨. 특정 유화제 제조에 사용되는 겨자씨의 베헨산을 알레르겐 표시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EU) 1169/2011 부속서 II 개정됨. 이는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로, 겨자 알레르기가 있는 개인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유럽연합 관보 고시일로부터 20일 후 발효됨.
- "EU 식품 건강강조표시 승인 거부"가 2024년 5월 24일 공표됨.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특정 건강강조표시(질병 위험 감소 및 아동 발달·건강 관련 표시 제외)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하는 규정안을 채택함. 규정(EC) 1924/2006에 명시된 조건을충족하지 못한 표시들은 사용이 금지됨. 본 규정은 EU 관보 고시일로부터 20일 후 발효됨.
- "EU 식품 접촉 재료 및 포장재의 BPA 및 비스페놀 유도체 사용 금지"가 2024년 6월 27일 공표됨. BPA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특정 경우를 제외한 비스페놀 유도체 사용도 제한함. 일부 식품 접촉용도에서 BPA가 용출되지 않는 조건하에 사용을 허용하며, 규정 준수 및 시험 요건을 제정함. 본 규정은 2024년 11월 채택 예정이며, EU 관보 고시일로부터 20일 후 발효됨.

⁴⁾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EU 고위험 유기 제품 및 전환기 제품 수입 규정 개정"이 2024년 7월 5일 공표됨. 기존 고위험 유기 제품의 100%에 대해 시행되던 식별·물리적 검사 및 샘플링 요구사항을 삭제하고, 검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도입함. 본 규정은 2024년 4분기 채택 예정이며, EU 관보 고시일로 부터 3일 후 발효됨.
- "EU 식품보조제 규정 개정"이 2024년 8월 7일 공표됨. 비타민 D 공급원으로 칼시디올 일수 화물(Calcidiol Monohydrate) 사용을 승인하며, 이를 식품보조제에 추가할 수 있도록 지침 2002/46/EC 부속서 II를 개정함. 본 조치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안전성 평가를 반영한 결과 이며, 2025년 1분기 채택 예정이며, EU 관보 고시일로부터 20일 후 발효됨.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유럽의회 식품안전 페이지	https://ec.europa.eu/food/safety/labelling_ nutrition_en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丑	라벨 기사항 수항목)	제품명원재료첨가물순중량보관 방	・사업자 정보 ・영양정보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제조번호(Lot 번호) 표기 언어 글자 크기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제품명	상표와 브랜드는 표기할 수 있으나 상품명으로 사용 불가함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되, 필요한 경우 식품의 속성을 설명하는 명칭(descriptive name)을 사용해야 함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남	높은 순서대로 백분율과 함께 표시	
	원재료명	면의 경우, '면' 문자 다음에 괄호를 일반적인 이름으로 표시	붙여 '밀가루', '메밀', '달걀가루', '소금' 등 가장		

		스프 및 조미료의 경우, '닭고기 추출물', '간장', '향신료', '피' 등 가장 일반적인 이름으로 표시
	원재료명	완제품의 5% 이상의 원료에 한해 순중량 순으로 기재할 것
		2% 넘지 않는 성분은 뒤쪽에 표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강조해서 표기
	첨가물	가공보조제, 캐리-오버(원료에서 이행된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첨가물은 표시 생략 가능함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A 771	무게 단위로 '킬로그램'또는 '그램'으로 표시
	순중량	부피 단위는 ml(밀리리터), cl(센티리터), l (리터) 중 하나를 표시
라벨	보관방법	제품이 특별한 보관 상태 또는 사용 상태를 요구할 때는 이러한 상태를 명시
표기사항 (가이드)		필요한 경우 개봉 후 적절한 보관방법과 소비를 위한 제한 시간을 함께 기재
	원산지	최종 제품의 원산지와 최종 제품에 포함된 주요 성분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주원료의 원산지를 기재하거나 '(주원료)는 (최종 제품의 원산지)에서 유래하지 않음'을 기재
		위원회 실시 규칙(EU) 2018/775에 따라서 최종 제품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원산지 국기 등이 패키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임
	조리방법	조리 예시가 없어서 적절한 식품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법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안내
	사업자 정보	식품 정보 제공에 책임이 있는 회사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만일 그 회사가 유럽연합 내에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유럽연합 영내로 수입하는 수입업체를 기재
	영양 정보	의무 기재사항: 열량, 지방 함량, 포화지방 함량, 탄수화물 함량, 설탕 함량, 단백질 함량, 소금 함량

의무 기재사항은 포장지 걸면에 눈에 띄게 표로 만들어 한눈에 다 들어오도록 표시하아 함. 포장지 걸면에 충분한 공간이 없을 경우, 단순한 일직선의 형태로 영양 정보를 기재. 영양 정보는 비율(%)로 표시할 수 있으며, 성인 일일 영양 전쟁과 함께 표시 가능함 (권장 영양소 함량은 100g 또는 100ml를 기준으로 표시하야 함(예: 100g당 나트륨 1g). 영양 정보는 비율(%)로 표시할 수 있으며, 성인 일일 영양 권장량과 함께 표시 가능함 (권장 영양소 함량은 100g 또는 100ml 당, 또는 비율(%)로 표시) 전택 기재사항: 불포화지방 함량, 폴리올 함량, 전분 함량, 식이섬유 함량, 비타민 또는 미네랄 함량 영양 정보는 100g 또는 100ml 기준으로 표기할 것 접취기한: Best before, Best before end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를 기재 청소보존일: Use by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를 기재 명시된 성분 또는 가공보조제 또는 이들 성분에서 유래한 물질로, 식품 제조 또는 손질 과정에서 사용되고 어떠한 변형된 형태로든 완제품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제품 성분 리스트에 포함 다른 성분들과 구분하여 강조할 때는 'Contains'라는 표현 다음에 알레르기 항원 인자 성분을 표기 유럽연합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① 글루텐 함유 곡룡, ② 갑각류, ③ 난류, ④ 어류, ⑤ 땅콩, ⑥ 대두, ⑦ 우유, ⑥ 견과류, ⑥ 셀러리, ⑩ 격자, ⑪ 참깨, ⑫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10mg/kg 이상) ⑥ 루핀, ⑥ 연체동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 제조, 포장된 동일 식품군에 속한 판매 개체들의 총체로, 소비자가 사전포장 식품 원산지를 추적 가능 다른 라벨 문구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L로 시작 단, 유통기한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제조 번호는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 제품이 판매되는 현지 국가의 언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의 병기도 가능함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이 가능함 유럽연합 가입국의 언어로도 추가 기재가 가능함 글자 크기는 최소 1.2mm 이상이어야 함 단, 제품 면적이 80cm² 미만의 경우 글자 크기는 최소 0.9mm 이상이어야 함			
선택 기재사항: 불포화지방 함량, 폴리올 합량, 전분 함량, 식이섬유 함량, 비타민 또는 미네랄 함량 영양 정보는 100g 또는 100ml 기준으로 표기할 것 선취기한: Best before, Best before end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를 기재 최소보존일: Use by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를 기재 명시된 성분 또는 가공보조제 또는 이들 성분에서 유래한 물질로, 식품 제조 또는 손질 과정에서 사용되고 어떠한 변형된 형태로든 완제품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제품 성분 리스트에 포함 다른 성분들과 구분하여 강조할 때는 'Contains'라는 표현 다음에 알레르기 항원 인자 성분을 표기 유럽연합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① 글루텐 함유 곡물, ② 갑각류, ③ 난류, ④ 어류, ⑤ 명콩, ⑥ 대두, ⑦ 우유, ⑥ 견과류, ⑥ 셀러리, ⑩ 겨자, ⑪ 참깨, ⑫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10mg/kg 이상) ⑱ 루핀, ⑭ 언체동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 제조, 포장된 동일 식품군에 속한 판매 개체들의 총체로, 소비자가 사전포장 식품 원산지를 추적 가능 다른 라벨 문구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L로 시작 단, 유통기한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제조 번호는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 제품이 판매되는 현지 국가의 언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의 병기도 가능함 유럽연합 가입국의 언어로도 추가 기재가 가능함 글자 그리			포장지 겉면에 충분한 공간이 없을 경우, 단순한 일직선의 형태로 영양 정보를 기재. 영양 정보는 제품 100g 또는 100ml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함(예: 100g당 나트륨 1g). 영양 정보는 비율(%)로 표시할 수 있으며, 성인 일일 영양 권장량과 함께 표시 가능함
대통기한 대취기한: Best before, Best before end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를 기재 지소보존일: Use by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를 기재 명시된 성분 또는 가공보조제 또는 이들 성분에서 유래한 물질로, 식품 제조 또는 손질 과정에서 사용되고 어떠한 변형된 형태로든 완제품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제품 성분 리스트에 포함 다른 성분들과 구분하여 강조할 때는 'Contains'라는 표현 다음에 알레르기 항원 인자 성분을 표기 유럽연합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① 글루텐 함유 곡물, ② 갑각류, ③ 난류, ④ 어류, ⑤ 땅콩, ⑥ 대두, ⑦ 우유, ⑥ 건과류, ⑨ 셀러리, ⑩ 겨자, ⑪ 참깨, ⑫ 이산화황 및 이황산염(10mg/kg 이상) ⑱ 루핀, ⑯ 연체동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 제조, 포장된 동일 식품군에 속한 판매 개체들의 총체로, 소비자가 사전포장 식품 원산지를 추적 가능 다른 라벨 문구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L로 시작 단, 유통기한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제조 번호는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 제품이 판매되는 현지 국가의 언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의 병기도 가능함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이 가능함 유럽연합 가입국의 언어로도 추가 기재가 가능함 글자		0-1	
유통기한 최소보존일: Use by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를 기재 명시된 성분 또는 가공보조제 또는 이들 성분에서 유래한 물질로, 식품 제조 또는 손질 과정에서 사용되고 어떠한 변형된 형태로든 완제품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제품 성분 리스트에 포함 다른 성분들과 구분하여 강조할 때는 'Contains'라는 표현 다음에 알레르기 향원 인자 성분을 표기 유발물질 (나라 병호) 대두, ② 우유, ⑧ 건과류, ⑨ 셀러리, ⑩ 겨자, ⑪ 참깨, ⑪ 이산화황 및 야황산염(10mg/kg 이상) ® 루핀, ⑭ 언체동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 제조, 포장된 동일 식품군에 속한 판매 개체들의 총체로, 소비자가 사전포장 식품 원산지를 추적 가능 다른 라벨 문구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로 시작 단, 유통기한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제조 번호는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 제품이 판매되는 현지 국가의 언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의 병기도 가능함 그러 열대한 가입국의 언어로도 추가 기재가 가능함 글자 크기는 최소 1.2mm 이상이어야 함			영양 정보는 100g 또는 100ml 기준으로 표기할 것
최소보존일: Use by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를 기재 명시된 성분 또는 가공보조제 또는 이들 성분에서 유래한 물질로, 식품 제조 또는 손질 과정에서 사용되고 어떠한 변형된 형태로든 완제품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제품 성분 리스트에 포함 다른 성분들과 구분하여 강조할 때는 'Contains'라는 표현 다음에 알레르기 항원 인자 성분을 표기 유럽연합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① 글루텐 함유 곡물, ② 갑각류, ③ 난류, ④ 어류, ⑤ 땅콩, ⑥ 대두, ⑦ 우유, ⑥ 건과류, ⑥ 셀러리, ⑩ 겨자, ⑪ 참깨, ②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10mg/kg 이상) ⑥ 루핀, ⑭ 언체동물 지조번호 (Lot번호) 지조번호 (Lot번호) 다른 라벨 문구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L로 시작 단, 유통기한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제조 번호는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 제품이 판매되는 현지 국가의 언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의 병기도 가능함 수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이 가능함 유럽연합 가입국의 언어로도 추가 기재가 가능함 글자 크기는 최소 1.2mm 이상이어야 함		OFJE	섭취기한: Best before, Best before end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를 기재
과정에서 사용되고 어떠한 변형된 형태로든 완제품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제품 성분 리스트에 포함 막게나항 (가이드) 다른 성분들과 구분하여 강조할 때는 'Contains'라는 표현 다음에 알레르기 항원 인자 성분을 표기 유럽연합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① 글루텐 함유 곡물, ② 갑각류, ③ 난류, ④ 어류, ⑤ 땅콩, ⑥ 대두, ⑦ 우유, ⑥ 견과류, ⑨ 셀러리, ⑩ 겨자, ⑪ 참깨, ⑫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10mg/kg 이상) ⑬ 루핀, ⑭ 연체동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 제조, 포장된 동일 식품군에 속한 판매 개체들의 총체로, 소비자가 사전포장 식품 원산지를 추적 가능 다른 라벨 문구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L로 시작 단, 유통기한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제조 번호는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 제품이 판매되는 현지 국가의 언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의 병기도 가능함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이 가능함 유럽연합 가입국의 언어로도 추가 기재가 가능함 글자 그가		유동기안	최소보존일: Use by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를 기재
### #################################			과정에서 사용되고 어떠한 변형된 형태로든 완제품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제품 성분
유럽연합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① 글루텐 함유 곡물, ② 갑각류, ③ 난류, ④ 어류, ⑤ 땅콩, ⑥ 대두, ⑦ 우유, ⑧ 견과류, ⑨ 셀러리, ⑩ 겨자, ⑪ 참깨, ⑫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10mg/kg 이상) ⑬ 루핀, ⑭ 연체동물 지조번호 (Lot번호) 지조번호 (Lot번호) 다른 라벨 문구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L로 시작 단, 유통기한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제조 번호는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 제품이 판매되는 현지 국가의 언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의 병기도 가능함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이 가능함 유럽연합 가입국의 언어로도 추가 기재가 가능함 글자 크기는 최소 1.2mm 이상이어야 함	표기사항		
제조번호 (Lot번호)	(가이드)		④ 어류, ⑤ 땅콩, ⑥ 대두, ⑦ 우유, ⑧ 견과류, ⑨ 셀러리, ⑩ 겨자, ⑪ 참깨,
(Lot번호) 다른 라벨 문구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L로 시작 단, 유통기한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제조 번호는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 제품이 판매되는 현지 국가의 언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의 병기도 가능함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이 가능함 유럽연합 가입국의 언어로도 추가 기재가 가능함 글자		—	
표기 언어 프래되는 현지 국가의 언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의 병기도 가능함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이 가능함 유럽연합 가입국의 언어로도 추가 기재가 가능함 글자 크기는 최소 1.2mm 이상이어야 함			다른 라벨 문구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L로 시작
표기 언어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이 가능함 유럽연합 가입국의 언어로도 추가 기재가 가능함 글자 글자 크기는 최소 1.2mm 이상이어야 함			단, 유통기한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제조 번호는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
선어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작이 가능함 유럽연합 가입국의 언어로도 추가 기재가 가능함 글자 크기는 최소 1.2mm 이상이어야 함			제품이 판매되는 현지 국가의 언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의 병기도 가능함
글자 크기는 최소 1.2mm 이상이어야 함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이 가능함
글사 - 12 12 12 13 13 1 1 1 1 1 1 1 1 1 1 1 1			유럽연합 가입국의 언어로도 추가 기재가 가능함
크기 단, 제품 면적이 80cm² 미만의 경우 글자 크기는 최소 0.9mm 이상이어야 함		글자	글자 크기는 최소 1.2mm 이상이어야 함
		크기	단, 제품 면적이 80cm² 미만의 경우 글자 크기는 최소 0.9mm 이상이어야 함

^{*} 자료 : EU법령포털(EUR-LEX)

• 침향차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센차
원재료명	100% 유기농 녹차
내용량	1봉지 200ml, 5봉지
섭취 방법	컵당 티백 1개에 90℃ 끓는 물을 붓고 2분간 우려냅니다
저장방법	건조한 곳에 보관
제조사	Ulrich Walter GmbH 박사. - Jurgen-Ulderup-Straße 12 49356 독일 디에폴츠 www.lebensbaum.de
유통기한	2027년 7월 말까지
재활용 안내	티백 → 유기 폐기물 비료 상자 → 폐지
문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info@lebensbaum.de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제형 조미료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알나투라 소고기 육수			
원재료명	천일염, 소고기 분말* 12%, 현미 가루*, 소고기 지방* 9.8%, 팜유*, 치커리 추출물*, 토마토 분말* 2.4%, 볶은 양파 분말* 2.4%, 농축 야채 주스*(당근*, 양파*), 효모 추출물*, 마늘*, 호박 분말*, 월계수잎*, 파슬리*, 포르치니 버섯 분말*, 레비스톡 뿌리*, 후추*, 해바라기유*, 레비스톡 잎*, 회향 씨* * 유기농 농업에서 재배됨. 셀러리 흔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용량	66g = 6 x 11g = 3L			
유통기한	2026년 3월 2일			
저장방법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제조지	독일			
조리법	1 큐브를 0.5L 끓는 물에 녹입니다			
	100g 당 평균 영양 성분			
영양성분 정보	열량 지방 - 그 중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 그 중 당류	20kJ(5kcal) < 0.5g 0.2g < 0.5g < 0.5g	식이섬유 단백질 나트륨	⟨ 0.5g ⟨ 0.5g 1.0g

● 인증

[필수 인증]

-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EU의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 위생 기준, 라벨링 규정, 오염물질 허용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제도로, 가공, 부분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았거나 인간이 섭취하도록 의도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물질과 제품에 적용됨.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이 가능하며, 수출 시 준수 해야 하는 필수 인증사항임

인증명	·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		
발행 및 검사기관	・유럽 식품안전청(ESFA)	****	
강제유무	·필수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제출 서류	• 인증 신청서		
비용	· 없음		
소요기간	• 별도 소요 기간 없음(유럽 식품 안전 규정 준수)		
유효기간	・별도 유효 기간 없음(유럽 규정 변경 시 개정 필요)		
절차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나 불시검사를 통해 EU 식품관련 규칙 위반시 수입거부 및 반송, 폐기될 수 있음		

• 유럽 노블푸드(신식품) 등록

- 노블푸드는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에서 인간이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하지 않은 식품, 새롭게 개발된 혁신적인 식품, 새로운 기술과 생산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그리고 전통적으로 EU 이외의 지역에서 먹어온 식품 또는 성분을 의미하며, 시장 출시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유전자 변형 식품(GMO), 식품 효소, 식품 첨가물, 식품 향료, 특정 추출 용매 사용 식품 등은 노블 푸드 승인이 불가능함.

인증명	• 유럽 노블푸드 등록		
발행 및 검사기관	・유럽 식품안전청(ESFA)	****	
강제유무	・필수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제출 서류	· 협의요청서, 커버 레터, 기술 문서, 증빙 서류 등		
비용	• the state of th		
소요기간	• 약 10개월		
유효기간	・별도 유효 기간 없음(유럽 규정 변경 시 개정 필요)		
절차	・EU 내 소비 이력 확인 → 노블푸드 규정 적용 여부 확인 → Union List 확인 → Regulation(EU) 2018/456절차에 따라 등록		

[선택 인증]

- 유럽채식협회(V-Label)
- 유럽채식협회 인증은 EU의 대표적인 채식 인증 제도로 유럽 회원국에서 통용됨. 유전자조작(GMO) 제품 및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은 인증을 받을 수 없음. 인증은 1년 간 유효하며 인증 만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됨

인증명	· 유럽채식협회 (V-Label)	ecc.
발행 및 검사기관	・유럽채식협회 (EVU)	ON PROPERTY.
강제유무	• 선택	VEGAN
제출 서류	• 기업정보 및 연간매출액, 인증 신청한 제품 수, 신청한 제품에 대한 전년도 판매 매출액, 신제품일 경우 향후 1년간 예상 매출액	VEGAN
비용	• 최초 심사 비용 약 30만 원, 갱신 비용 약 40만 원	
소요기간	· 약 20일~60일	
유효기간	·1년	
절차	・인증신청 → 제안서 제공 → 제안서 승낙 → 현장심사 → 결과통보	

• 지리적표시(GI)

- EU의 지리적표시 인증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고유한 명칭을 보호 하기 위한 인증 제도로, 원산지 표시 보호(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전통 특산물 보증(TSG) 으로 나뉨. 유럽연합 회원국과 동등성을 인정받은 역외국에서 통용이 가능하며 한-EU FTA 협정에 따라 한국 지리적 표시(PGI) 등록 시 EU 내에서 지리적표시(GI)인증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음. 각 인증 유형별로 신청가능한 품목, 근거 규정, 자격 요건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증 취득전 취득 요건을 확인해야 함

인증명	·지리적표시(GI)	원산지 표시 보호
발행 및 검사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PDO) 지리적 표시 보호
강제유무	• 선택	(PGI)
제출 서류	• 출원서와 상품명세서	전통 특산물 보증 (TSG)
비용	• 없음	
소요기간	• 3년 이내(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 있음)	
유효기간	·1년	
절차	・인증신청(국내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 → 심사(국내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 → 유럽위원회 송부 → 심사 및 관보 공개 → 이의제기 및 상호합의 → 지리적 표시 등록	

• Global Gap(우수 농산물 기준: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Global Gap는 농업 및 어업(AF), 작물(CB), 과일 및 채소(FV) 3가지로 구성되며 농화학과 의약품 투입의 최소화 촉진 및 농장보증체계 채택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유효인증기간은 1년이며, 26개 대분류. 233개 세부 항목으로 가장 방대한 인증 기준을 보유함

인증명	・Global Gap ・(우수 농산물 기준: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발행 및 검사기관	• FoodPLUS	
강제유무	· 권장	GLOBALG.A.P.
제출 서류	• 인증신청서	
소요기간	•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	
유효기간	· 1년	
절차	• 인증신청 → 인증 수수료 납부 → Global GAP 데이터베이스 등록 → 심사 일정 안내 → 현장 심사 → 부적합 사항 처리 → 인증 결정 검토 → 인증 승인 및 인증서 송부	

• BRCGS(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Food Standard)

- BRCGS 인증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제조업체의 안정성, 품질, 운영 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됨. 해당 인증은 유통망 내 가공 및 유통되는 모든 업체들의 제품을 이해하고, 식품 안전 위험을 식별하여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음

인증명	BRCGS(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Food Standard)	
발행 및 검사기관	·BRCGS	BR@S
강제유무	· 선택	DRES
제출 서류	• 인증신청서	
소요기간	• 품목에 따라 상이	
유효기간	• 6개월/12개월	
절차	・가이드라인 검토 → 자체 심사(선택) → BRCGS 승인 인증기관 선택 → 인증범위 결정 및 정보제공→ 인증심사 수행 → 부적합 사항 처리 → 인증 발행	

• FSSC22000(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22000, 식품안전체계인증)

- FSSC22000 인증은 ISO22000를 기반으로 한 인증으로 더 빠르게 보급되었음. 위해요소분석 중점 관리기준(HACCP)도 포함돼 있어,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국내 심사원 심사로 인한 비용 절감, 갱신 주기에 따른 차후 비용 절감 등 다른 인증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많아 식품업계의 선호도가 높음

인증명	• FSSC22000	
발행 및 검사기관	Foundation FSSC (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OFSSC 22000
강제유무	· 선택	
제출 서류	• 인증신청서	
소요기간	•조건에 따라 상이(평균 6~9개월)	
유효기간	·3년	
절차	・인증신청 → 예비심사(선택) → 1차심사(문서심사) → 2차심사(현장심사) → 인증서 발급	

• Halal Certification Europe(HCE)

- HCE는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에 사용되는 인증이며 할랄 제품들을 관리할 수 있음. 인증이 발급 되면 제품에 할랄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이 허락했다는 종교적 의미와 제품의 유통과 보관과정 중에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는 안심 마크 기능을 가지고 있어 비 무슬림 사이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유럽에 5천만 명의 할랄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장성을 높일 수 있음. 유효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엔 재발행할 수 있음

인증명	Halal Certification Europe(HCE)	
발행 및 검사기관	• GAC(GCC Accreditation Center)	
강제유무	· d택	
제출 서류	• 인증 신청서, 기타 관련 자료	
소요기간	• 품목마다 상이	
유효기간	· 1년	
절차	・인증신청 → 원재료 및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인증발급	

• The Crossed Grain Trademark(CGT)

- AOECS의 글루텐 프리 기준으로 설정된 인증으로 HACCP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의 만성소화장애증(Celiac Disease)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기준임. 이 글루텐 프리 인증은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에서 등록 및 보호받고 있음. 식품뿐 아니라 포장, 원재료 등에도 인증이 사용되며 AOECS 감시하에 12,000여개의 제품이 관리되고 있음

인증명	• The Crossed Grain Trademark (CGT)	
발행 및 검사기관	AOECS(Association of European Coeliac Societies)	
강제유무	· 선택	
제출 서류	• 인증 신청서	
비용	• 신청자에 따라 상이함	
소요기간	· 시험자에 따라 상이함	
유효기간	·1년	
절차	・인증신청 → 현장심사 → 인증발급 → 연간검사	

• EURO LEAF 인증

-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유기농 제품 생산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기 위함.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 유기농인증을 부여함. 생산 및 가공 시 첨가물 및 화학물질 사용 제한, 방사선조사 및 유전자변형 성분 사용 금지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인증명	· EURO LEAF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 유럽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강제유무	• 선택	****	
제출 서류	• 회사 행정 정보, 유기농 규정 준수와 관련된 기록 문서, 유기농 생산 및 관리 계획 등		
비용	·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함		
소요기간	·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함		
유효기간	·1년		
절차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최종검토 → 인증서 발급		

• Vegan Society 인증

-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품에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기준으로 부여함. 소비자들이 세부 원재료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쉽게 비건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원료 선택부터 제품의 제조 및/또는 전체 생산단계에 걸쳐 그 어떠한 동물성 원료 및 생산품, 부산품, 부산물 혹은 파생물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증명함

인증명	• Vegan Society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 영국 비건 협회(The Vegan Society)	Jan Marie
강제유무	• 선택	(Zangint
제출 서류	・회사 기본정보, 제품유형, 제품수, 회사규모 등이 작성된 사전 질문지 ・비건 증명서류, 동물 실험 및 교차 오염 확인서	Vegan
비용	・1년 약 1,330만 / 2년 약 2,200만 원	
소요기간	· 평균 6개월	
유효기간	· 1년~2년	
절차	・상담/문의 → 견적제공 → 인증신청 → 비용입금 → → 인증서 발급	서류확인 → 라이선스 계약서 서명

• EVE VEGAN 인증

- 윤리적 및 환경적 문제를 우려하는 소비자의 증가에 따라 VEGAN 제품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 필요해짐. EVE VEGAN은 VEGAN FRANCE 협회가 2016년 설립한 EXPERTISE VEGANE EUROPE S.A.S.의 서비스 인증브랜드임

인증명	· EVE VEGAN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 EXPERTISE VEGANE EUROPE S.A.S			
강제유무	· 선택			
제출 서류	정보 시트,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로고, 인증 계약서, 회사 소개서 파일 형태 또는 레시피(기술 시트), 완제품 라벨링, 완제품 사진, 포자 시트, 브랜드 로고, 완제품에 살아있는 동물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서, 기타 제품 인증서 원료 세부사항, 원료는 살아있는 동물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서 하청 업체 신고서	VEGAN EVE VEGAN 01		
비용	· 신청자에 따라 상이함			
소요기간	· 30일~45일			
유효기간	· 18개월			
절차	・상담/문의 → 견적제공 → 인증신청 → 비용입금 → 서류확인 → 라이선스 계약서 서명 → 인증서 발급			

(3) 통관거부사례 현황

▶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비교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EU에서 확인된 한국산 식품 통관거부 사례는 총 26건으로 집계됨. 2024년 EU에서 확인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의 총 건수는 7건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성분 부적합 문제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표 10. 2022~24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사유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라벨링/포장	1	0	0	1
성분 부적합	8	3	3	14
위생	1	0	0	1
서류미비	1	2	0	3
잔류농약 검출	1	0	1	2
기타	1	1	3	5
합계	13	6	7	26

▶ 2024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 2024년 EU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는 총 7건으로, 성분 부적합 문제 3건, 기타 3건, 잔류농약 검출 사유가 1건 발생함

표 11. 2024년 월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건수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분 부적합	0	0	1	1	0	0	0	0	0	1	0	0	3
위생	0	0	0	0	0	0	0	0	0	0	0	0	0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잔류농약 검출	1	0	0	0	0	0	0	0	0	0	0	0	1
기타	0	1	0	0	1	0	0	0	0	0	1	0	3
합계	1	1	1	1	1	0	0	0	0	1	1	0	7

• 통관거부 세부 사유별 건수

사유	세부내용	건수		
	미승인 신소재 Hoveia Dulcis 함유	1		
성분	요오드 함량이 높음	1		
	금지된 냉동 동물의약품 수입 가능성 확인	1		
잔류농약	무허가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함유	1		
	수의학 검사 미실시	1		
기타	필요한 수의학적 검사 없이 국경 통과	1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유기체 150mg 검출			
	7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기타조제 농산품	2	28.6	유전자 변형 유기체 검출
	면류	1	14.3	필요한 수의학적 검사 없이 국경 통과
농산물	소스류	1	14.3	수의학 검사 미실시
	음료	1	14.3	미승인 신소재 Hoveia Dulcis 함유
	차류	1	14.3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소 계		6	85.7	
수산물	해조류	1	14.3	요오드 함량 초과
소 계		1	14.3	
총합계		7	100.0	

04 수출 애로사항

❷ 영국 식물성 단백질 제품 수입 및 창고 운영 규정

해당국가	영국
관련품목	식물성 단백질 제품 (HS코드 2106.90)
유형*	TBT
주요 내용	 영국 현지에서 창고 운영 및 배송 처리 시 Companies Act 2006에 따라 UK Limited Company 등록이 필수임 Companies House 등록 시 다음 사항이 요구됨 기본 등록 서류(여권 사본, 주소 증명) / Director Service Address 제공 / 연간 £85,000 이상 매출 시 VAT 등록 Fulfilment House Due Diligence Scheme(FHDDS) 적용 대상으로 다음을 준수해야 함 고객 실사 기록 2년간 보관 / 물류 추적 시스템(LOT 번호) 관리 / 미등록 시 £500~£3,000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수입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함 EORI 번호가 포함된 수입신고서 / 제품 구성, 중량, 가격이 명시된 상업송장 /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 IPAFFS 시스템을 통한 사전 신고 다음과 같은 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함 알레르기 표시(대두/글루텐 등) 의무 / 비건 제품의 경우 "Vegan" 표기 규정 준수 / 첨가물 사용 시 EFSA 승인 확인
애로 사항	 식물성 단백질 제품의 영국 수입 및 현지 창고 운영을 위해서는 복잡한 등록 절차와 다양한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기타	※ 영국 Companies Act 2006 원문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6/46/contents

♦ 수산물 제품 어획 증명서 발급

해당국가	EU
관련품목	냉동만두
유형*	TBT
주요 내용	 EU IUU 규정(EC) No 1005/2008에 근거하여 불법·비보고·불규칙(IUU) 어업으로 포획된 수산물의 EU 시장 유입을 차단함 해산물 만두의 경우 원재료 중 야생포획 수산물 함량이 20% 이상일 때 어획증명서가 필수임 어획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음 수출업체가 NFQS에 어선 허가증/면허증 사본, 어업 활동 확인서, 거래 명세서를 제출 NFQS의 어선 국적국 법규 준수 여부, 포획량, 종류 등 검증 검증 완료 시 EU 표준 양식의 어획증명서 발급(영어 작성 필수) 발급 조건으로는 다음 사항이 요구됨 국적국의 어업 면허를 보유한 어선에서 포획 포획 지역·시기·종류가 국제/국내 법규와 일치 HS Code 0302(냉장), 0303(냉동)에 해당하는 생물종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 중량 추적이 가능해야 함 양식산 어류, 민물고기, 조개류 일부는 증명서가 면제됨
애로 사항	• EU 수출용 해산물 만두 제조 시 어획증명서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어려움이 있음
기타	※ EU의 어획증명서 관련 규정 (EC) No 1005/200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8R1005 &qid=1739270412006

● EU 포장재 관련 환경규제 강화

해당국가	EU(영국)
관련품목	식품전반
유형*	기타(환경)
주요 내용	2030년까지 모든 포장은 경제적 타당성 있는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2035년부터는 실제 재활용 시설에서의 처리 가능성이 검증되어야 함 식품 접촉 포장에서 PFAS 및 BPA 사용이 금지되며, 중금속 농도 기준이 기존 100ppm에서 추가 강화될 예정임 포장재에 재료 구성 표시, EU 통합 분리수거 로고 부착, QR 코드를 통한 상세 정보 제공이 의무화됨 1.5kg 미만 과일·채소의 단일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 수출업체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함 PFAS/BPA 무첨가 소재로 전환 재활용 용이한 단일 재질 포장 채택 EU 요구사항에 따른 재료 명시 및 분리수거 기호 부착 EUDR 준수를 위한 원료 추적 시스템 구축 PPWR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및 테스트 리포트 확보
애로 사항	• 환경정책 강화로 인한 패키지 재료 표기 등 새로운 규제 요구사항이 많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기타	※ EU PPWR 규정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만두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만두 제품 성분 검토 시 식품 유형 분리 검토 방법 (만두피와 만두속)
- 생강 기반 소스의 설탕+말토텍스트린을 설탕+소르비톨(E420) 배합으로 변경 가능 여부 및 제품 유통기한 연장 증명 자료
- 로즈마리 추출물(E392)의 사용제한량 계산 방법
- 어묵 내 식품첨가물 E451의 사용제한량 적용 기준

♪ 제품 조사 결과

- 만두 제품 성분 유형 분류
- ▶ 만두피 관련 식품 유형 검토
- 유럽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테고리 7.2(고급 베이커리 제품)는 아래와 같이 정의됨:
 - ① 쿠키, 케이크, 머핀, 도넛, 비스킷, 마카롱, 러스크, 시리얼 바, 페이스트리, 파이, 스콘, 코넷, 웨이퍼, 크럼핏, 팬케이크, 진저브레드, 에클레어, 크루아상 같은 달거나 짜거나 풍미가 있는 제품은 물론, 크래커, 바삭한 빵 및 빵 대용품과 같은 무가당 제품[준비된 반죽 또는 준비용 믹스 포함]이 해당
 - ② 스펀지 케이크, 에소블라텐, 웨이퍼 페이퍼 및 식용 종이도 포함됨
- 만두피의 경우 다음 범주 중 하나가 더 정확할 것으로 판단됨:
 - ① 6.4.1. 신선한 파스타: 보존 및 위생을 위해 생산 공정에서 열처리를 거치는 파스타가 포함. 신선한 파스타의 습도 함량은 약 25%임
 - ② 6.4.2. 건조 파스타: 일반적으로 건조 고형물의 수분 함량이 13%를 초과하지 않는 파스타가 포함. 열처리(사전 조리)된 건식 사전 조리 파스타도 포함
 - ③ 6.4.3. 미리 조리된 신선한 파스타: 열처리된 신선한 파스타(사전 조리된)가 포함

- ▶ 만두속 관련 식품 유형 검토
- 만두속 재료는 6.4.5 [속을 채우 파스타의 속재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생강 기반 소스 성분 변경 및 유통기한 연장 관련
- ▶ 소스에서 만두속으로, 그리고 완제품으로의 이월 원칙은 Art. 18 Reg. 1333/2008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됨
- (1)(b) 및 (3)에 따라 첨가물이 향료에 첨가되는 경우, 이월 원칙은 첨가물이 최종 식품에 기술적 기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됨
- 첨가물이 이월되는 성분이 향료로 간주되는 경우, 먼저 최종 식품에서 기술적 기능이 없거나 성분 자체가 향료로 간주되지 않는지 확인 필요
- ▶ Annex II Part A(2)(8)에 따라 건조 파스타에는 이월워칙이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 ▶ Article 18의 (4)항에서 언급된 "유통기한 연장"은 다른 조항의 요구사항을 거스르지 않아야 함
- "유통기한 연장"으로 간주되려면 최종 제품의 내구성이 시중의 유사 제품보다 최소 30% 이상 길어야 함
- 이러한 내용은 적절한 연구를 통해 문서화되어야 함
- 로즈마리 추출물(E392)의 사용제한량 계산 방법
- ▶ 계산 데이터
- 영양성분성적서의 조지방 함량: 33.53%
- 완제품 내 카르노솔 및 카르노산 함량: 14.35ppm
- ▶ 계산 방법
- 카르노솔과 카르노산의 양은 ppm으로 표시되며, 이는 mg/kg에 해당
- 제품 1kg에는 14.35mg의 카르노솔 + 카르노산이 들어 있음
- 지방의 양은 백분율로 표시되며, 이는 g/100g에 해당
- 지방이 제품 100g당 33.53g인 경우 제품 1kg에는 335.3g의 지방이 들어 있음 (1kg = 1000g)
- ▶ 최종 계산식
- $-14.35:335.3=X:1000 \rightarrow X=(14.35*1000)/335.3=42.8$
- 따라서 제품에는 지방 1kg당 42.8mg의 카르노솔+카르노산이 함유됨

• 어묵 내 F451 식품첨가물 사용제한량

- ▶ 어묵 성분 분석
- 성분 데이터에 따른 "어묵" 성분은 갈치과의 어류인 갈치의 일반명을 기반으로 함
- 해당 카테고리는 09.2 [가공어류 및 수산물 제품]임
- ▶ E451 첨가제 사용 가능 여부
- 이 카테고리에서 첨가제 $\rm E$ 451(삼인산염)은 "가디치과의 젓갈류"에만 허용되므로 이 성분에는 허용되지 않음
- 문의한 기준도 어류가 아닌 갑각류에 대한 것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 자문 결론

- 만두 제품 성분 유형 분류
 - 만두피: 6.4 카테고리(신선한 파스타, 건조 파스타, 미리 조리된 신선한 파스타) 중 제품의 수분 함량에 따라 적합한 범주 적용 권장
 - 만두속: 6.4.5 카테고리(속을 채운 파스타)로 분류가 적절함
- 생강 기반 소스 성분 변경 및 유통기한 연장 관련
- 설탕+말토덱스트린을 설탕+소르비톨(E420)로 변경 시 이월 원칙 적용 가능 여부는 첨가물이 최종 제품에서 기술적 기능이 없는지에 달려 있음
- 유통기한 연장 증명을 위해서는 최종 제품의 내구성이 시중 유사 제품 대비 30% 이상 길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 문서 필요
- 로즈마리 추출물(E392)의 사용제한량
 - 제시된 계산 방법은 정확하며, 완제품 내 지방 1kg당 42.8mg의 카르노솔+카르노산 함유량으로 계산됨
 - 이는 '지방 기준 함량 표시'라는 규제 조건에 부합하는 계산 방식임
- 어묵 내 F451 첨가제 사용
- 갈치를 사용한 어묵에는 F451 첨가제가 허용되지 않음
- 해당 첨가제는 가디치과의 젓갈류에만 허용되며, 갑각류 제품에도 적용되지 않음

(2) 유기농 가공식품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시장 수출을 위한 제품 라벨링 정보 검토
 - 바이오파흐(BIOFACH) 뉘른베르크 독일 전시회 참가를 위한 제품 라벨링 준비
- 한국 내 유기농 인증 제품의 유럽 시장 내 "유기농"표기 가능 여부 확인

♪ 제품 조사 결과

- 한국-EU 유기농 동등성 인정조약 조건
 - 원물이 아닌 가공식품에 한해 유기농 동등성 인정
 - 유기농 재료 95% 이상 함유한 경우에만 유기농 가공식품으로 인정
 - 한국 내 EU승인 유기농 인증시설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포장면에 표시한 경우만 동등성 인정
- 공급망 내 관련업체(운송사, 저장창고, 수입유통사) 모두 유기농 식품 취급 라이센스 보유 필요
- 유럽 유기농 표기 관련 규정
 - EU에서 승인한 한국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승인번호(KR로 시작)가 있어야 제품 라벨 및 패키지에 "유기농"이라는 단어 표기 가능
 - 승인번호 없이 사용된 제품에 표기된 한국의 유기농 인증마크는 유럽 현지에서 효력 없음
- 제품의 운송사와 EU 현지 수입/유통사 등 공급망 내 모든 관계업체가 유기농 식품 취급 허가 필요.
- 라벨링 필수표기 사항
 - 책임업체(수입사) 이름 및 주소
 - ① 유럽 타겟국가 별로 해당국가에 소재하는 수입사 정보 라벨 필수 표기
 - 소금 함량
 - ① 나트륨이 아닌, 제품 100g 당 함유된 소금의 양 표기 필요
 - 유기농 인증번호
 - ①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제품 패키지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EU에서 승인한 한국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해당제품에 대한 승인번호(KR로 시작) 라벨 및 패키지에 표기 필요

- 국가별 특이사항
 - 영국, 스위스는 EU가 아니므로 한국과의 유기농 동등성 인정조약 체결 현황이나 유기농 표기 조건 등을 별도로 확인 필요
 - 한국-EU 유기농 동등성 인정조약이 체결되었으나 한국의 유기농 식품이 EU회원국 내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음

♪ 자문 결론

- 한국-EU 유기농 동등성 인정조약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유기농"으로 판매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유기농 인증번호 확인 및 취득이 필요하며, 현재 보유한 유기농 인증을 발부한 기관을 통해 EU에서 승인한 인증번호(KR로 시작)가 있는지 확인 필요
- 한국-EU 유기농 동등성 인정조약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산 유기농 식품은 유통국 공용어로 표기된 라벨에 "유기농"이라는 워딩을 사용할 수 없으며, 포장면에 EU유기농 로고를 비롯한 유기농을 암시하는 그래픽 등의 사용이 제한됨
- 일반적인 수입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이라면, 유기농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수입유통은 가능함

2024년 한눈에 보이는 유럽연합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